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4일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정재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3년 11월 24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14조 제2항에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 폐지에 따라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
- 안 제14조 제4항에 30년 이상의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2023. 10. 12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도 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  
- 주요 내용으로는, 안 제14조 제2항의 기존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”을“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”로 변경하고, 안 제14조 제4항의 30년 이상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“20일”에서“30일”로 확대하려는 것임.
  
- 참고 사항으로, 현재 서울특별시 내 16개 자치구의회에서 30년 이상의 장기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3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.
  -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장기재직(30년 이상) 특별휴가 일수
    - ▶ 30일 : 16개 자치구의회
    - ▶ 25일 : 2개 자치구의회
    - ▶ 20일 : 7개 자치구의회
  
- 관련 법령의 근거규정 및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